

업역확대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

지난 5월21일 중국 쓰촨성(四川)에서 발생한 지진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자연 재해,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현 시점에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사들이 이러한 자연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 참여조차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붕괴사고, 공사중 구조물의 붕괴사고, 지진/태풍의 피해 사고 등의 재난을 우리는 인재(人災), 관재(官災), 법재(法災)사고로 평가하곤 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가 개정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전문분야에 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구조분야를 보면 구조계획, 구조계산, 구조설계도면, 골조공사시방서, 골조공사감리, 구조안전진단등의 구조전문분야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국가에서 전문 자격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부여해 놓고는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건축구조계산 분야만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원인은 기성 구조기술사들의 책임도 있으리라 보며 집단 이기주의와 다른 전문분야의 업역 까지도 차지하여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구조계산분야 뿐만 아니라 전 구조기술 분야의 업역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개정작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조기술자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조설계도면업무나 골조공사감리업무등의 어떤 전문구조 분야의 업무가 주어진다면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여 전문 구조기술 분야는 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고객 스스로 느끼게 하여 사회적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자들이 바라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쉽게 달성되리라 보며 사회적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할 몇 가지를 나열해 본다.

첫째 후배기술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후배기술자들의 양성과 업역 확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후배 구조기술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진원 영남지회 지회장
(주)OS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둘째 업역 확대에 노력하자.

기성 기술자들이 해온 구조계산업무에서 벗어나 구조설계도면, 골조공사 시방서, 골조공사감리, 안전진단 등의 구조기술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축적으로 업역 확대에 모든 구조기술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예를 들어 구조설계도면이나 골조공사감리의 용역을 받아 수행할 때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여 건축사사무소나 감리회사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면 국민들이 이 분야가 우리 구조기술자의 고유 분야임을 인식할 것이다.

먼저 구조계산업무를 보면-구조안전위주의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만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시공성 뿐만 아니라 건축적요소와 설비적요소와의 적합성은 너무 무시되어 도면 작업과 공사시 많은 수정작업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구조설계도면을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구조기술사가 그 도면에 대해 검토, 날인 하는 경우-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동시 날인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전혀 검토된 도면이 아닌 경우가 현장에 너무나 많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구조기술자들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구조계산서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류뿐만 아니라 시공성결여, 건축마감과 설비와의 부적합성, 도면간의 불일치 등 검토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도출되어 많은 수정이 필요한데도 검증 과정 없이 날인만 하는 우리 기술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결과는 기술용역비가 적정하지 못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적절한 용역비에 의한 계약과 최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기술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구조설계도면을 직접 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경우-몇몇 현장에서 이 도면은 시공이 불가능한 도면이라 재도면작업을 해야 한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 같은 구조기술사로서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은 심정 일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마감, 건축설비 등의 구조적인 전문분야 외에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시공성 결여, 각종 상세부족, 마감 및 설비적 요소와의 부적합성으로 도면 재작성이나 많은 수정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유감이고 우리 구조기술사들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골조공사감리를 참여하는 경우-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구조적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공 전에 도서의 적정성 검토나 시공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 하게 하여 문제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관련기술자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자.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관련 파트너들을 서로 비방하기 보다는 수주시 부터 건축사, 설비기술자, 부대토목기술자 등과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용역비와 스케줄이 견적, 계약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

건축사가 실시설계시에만 관련 파트너들을 참여시켜 협력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시 부터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여야 양질의 성과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서로 협력하자.

가능하면 시공사의 기술자들도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시킬 수 있다면 참여시키는 것이 시공성 고려한 공사도면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이 설계자의 수정시간을 줄여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자.

건축물 설계에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조경, 부대토목 등의 각각 전문분야가 있어 각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설계 성과품을 완성해 낸다.

그런데 그중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의 용역업무(관 발주용역) 분리 또는 공동 계약하나 구조, 설비, 부대토목, 조경분야는 전적으로 건축사사무소로 부터 하도급 받고 있으며 그중 구조설계분야는 구조계산을 제외한 구조설계도면, 골조공사시방서, 골조공사감리 업무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참여조차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우며, 그것은 부실 설계, 감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전문성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개정하여 해당 전문분야별로 책임기술자가 책임을 지고 그 전문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건설공사에서의 부실을 방지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구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구조기술자들은 업역 확대에 노력해야 하며 어떠한 구조전문업무가 주어진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주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기술자들이 전문분야별로 책임전문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느낌과 이해를 이끌어 내어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환경조성에 서로 노력하자.

우리 기술자들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 할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비판 및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자들의 자세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조기술자들이 어떤 구조전문분야의 용역을 받아 수행할 때 고객과 관련 기술자들이 그 구조분야가 정말 구조기술자의 고유 업무 라는 것을 느끼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법령 개정의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법적,제도적 개정에는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 사회적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조기술자들의 업역 확대에 대한 노력과 양질의 품질제공으로 법령의 개정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